##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27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 : 노웅래 • 윤미향 • 양이원영

김수흥 • 윤재갑 • 임종성

아수진비 · 김회재 · 황운하

양기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학대행위,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른바 "동물쇼"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고, 가학적인 형태의 쇼도 다수 행하여지고 있어, 다수의 동물이 희생되고 개체수가멸종 위기에 놓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 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목록에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추가하면서 그 보고주기를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로 변경함으로써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제 9조, 제10조 및 제16조).

#### 법률 제 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

제10조제1항 중 "매년 1회"를 "반기별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3호" 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제7조제4호"를 "제7조제5호"로 한다.

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	제7조(금지행위) ①
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	
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
	런시키는 행위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u>&lt;신 설&gt;</u>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
	하는 자는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보존)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u>현황</u>

제10조(	자료의	제출	1	동물	·원
또는	수족관	을 운	영하는	는 자	는
제9조	: 각 호	에 따	른 동	물원	및
수족	관의 윤	₽영·:	관리에	관	한
자료,	동물원	및 수	-족관	의 연	간
개방	일수를	<u>매년</u>	1회	시 •	도
지사여	에게 제:	출하여	야 한	다.	
( <u>2</u> ) ~	③ (생	! 략)			

제16조(벌칙) <신 설>

- ① 제7조제1호부터 <u>제3호</u>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4. ~ 7. (생략)

<u>반기별로</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2항을 위
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
<u> ② শ্রা4ই</u>
<u>.</u>
③
1.•2. (현행과 같음)
3. <u>제</u> 7조제5호
4. ~ 7. (생 략)